



제 434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혁신적 연구과제 선정 등〉

■ 김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942호)

2026.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강 대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혁신적 연구과제 선정 및 후속지원 체계 개편(안 제9조제4항제6호 및 제10조 제2항제1호)	3
2. 기술료 사용 용도 명시 및 자료 제출 요청 근거 마련(안 제18조제5항 및 제6항)	7
3. 연구과제 수행과정의 제재처분 기준 완화(안 제32조제1항제1호)	1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현의원 등 17인

나. 발 의 일 : 2026. 2. 23.

다. 회 부 일 : 2026. 2.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결과(목표달성도) 중심 평가체계로 인해 목표 미달시 연구개발비 감액, 과제중단, 극히 불량 시 제재조치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연구자들이 도전적 연구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으며, 과제의 선정평가 시 평가기준에 ‘목표의 도전성’ 관련 사항이 부재함. 또한, 과제가 우수한 경우 후속과제 연계가 가능하나 이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선정평가로 인해 우수성과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연구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과제계획 시부터 혁신적 연구목표가 설정되고, 목표 미달성한 경우에도 성실히 연구수행 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우수과제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한 과제의 후속과제는 선정평가 없이 추진되도록 법 개정 필요한 실정임. 아울러, 우수성과 활용·확산과 기술이전 수익 증대를 위해 성과의 가치 제고목적의 사용 용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비영리 기관의 기관별 기술료 사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근거 마련이 필요

한 실정임.

이에 우수과제의 후속과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과제의 선정평가 시 평가기준으로 ‘목표의 혁신성’을 추가하여 높은 수준의 목표를 제시한 연구과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제 선정 시 ‘연구목표의 혁신성’을 평가하도록 하며, 기술이전 수익 증대 목적의 기술료 사용 근거 및 기술료 사용 결과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평가등급 개편에 맞춰 과제평가 관련 제재처분 대상을 기존 ‘수행과정 및 결과가 극히불량’에서 ‘수행과정이 부적절’한 경우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9조제4항제6호 신설, 제10조제2항제1호, 제18조제5항제3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혁신적 연구과제 선정 및 후속지원 체계 개편(안 제9조제4항 제6호 및 제10조제2항제1호)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과정 또는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해당 과제의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9조제4항제6호 신설),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기준에 ‘연구개발 목표의 혁신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① ~ ③ (생략)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④ ----- ----- ----- ----- ----- ----- ----- -----.

현행	개정안
1. ~ 5. (생략) <u><신설></u>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① (생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를 거쳐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성격을 고려하여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의 <u>창의성</u>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2. ~ 5. (생략) ③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과정 또는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해당 과제의 후속 연구개발과제에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경우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1. ----- <u>창의성, 연구개발 목표의 혁신성</u> ----- ----- 2.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상 연구결과 및 목표달성도 중심의 평가체계로 인해 연구자들이 불이익을 우려하여 도전적 연구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과제가 우수한 경우 후속과제 연계가 가능하나, 독립적인 선정평가로 인해 우수한 선행연구의 성과를 후속연구로 연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과제 선정 시 연구목표의 혁신성을 장려하고, 우수 과제에 대한 후속연구의 연계 가능성을 높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
- 안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선정평가 기준에 ‘연구개발 목표의 혁신성’을 추가하는 것은 파급력이 큰 도전적 연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 과제 표준지침」에 따르면, 수행과정은 법령·협약 이행의 적정성 및 과제 수행내용의 일관성 등 성실도 위주의 정성평가로, 결과 평가는 목표달성률 및 질적 우수성 위주의 정성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음. 부

처별 2025년 과제평가 결과 ‘우수’ 이상 등급의 비율이 단계평가 20.4%, 최종평가 13.3% 수준임.

○ 다만, 안 제9조제4항제6호에 따른 후속과제 지정 요건과 관련하여, 수행주체를 기존 과제의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로 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의 유연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연구개발은 기초연구 단계에서 실무를 주도했던 ‘참여연구자’가 후속 응용연구 단계에서는 ‘연구책임자’를 맡아 프로젝트를 이끄는 등 연구 성격에 따라 수행 주체의 역할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현행 개정안과 같이 지정 대상을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로 한정할 경우 단절 없는 후속연구 수행에 오히려 제약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연구개발 단계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정 대상 범위에 해당 과제의 ‘참여연구자’를 넓게 포함하는 방안을 합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기술료 사용 용도 명시 및 자료 제출 요청 근거 마련(안 제18조제5항 및 제6항)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징수한 기술료의 사용 용도로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를 법률에 신설하여 명시하고(안 제18조제5항제3호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료 사용 용도 실태 분석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 ④ (생략) 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2. (생략) <u><신설></u> 3. (생략) <u><신설></u>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1.·2. (현행과 같음) 3. <u>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u>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⑥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료 사용 용도 실태 분석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소유</u>

현행	개정안
⑥ (생략)	<u>기관에 제5항에 따른 기술료 용도 사용 결과 등 필요한 자 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u> <u>이 경우 해당 연구개발성과소 유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8조제5항은 징수한 기술료를 보상금이나 재투자 등
에 사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밖의 용도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국가연구개발성과의 활용·확산과 관련된 핵심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음. 이에 개정
안은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
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용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고,
기술료 사용 용도 실태 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41조¹⁾에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및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기술료 사용 용도로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를 규정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료 사용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안 제18조제5항제3호는 이처럼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던 핵심적인 권리 확보 및 사업화 관련 용도를 모범에 명시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성과의 실질적인 가치 제고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연구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됨.

○ 또한, 안 제18조제6항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행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기술료의 사용)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한 금액은 제외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법 제1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용도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3. 운영경비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부지분기술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사용비를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60 이상
2.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5 이상
3.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4. 연구개발 채투자 및 기관운영경비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사용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분석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 역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기술료 사용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행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료 사용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안 제18조제6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만 자료제출 요청 권한을 한정하고 있어 양 규정 간 요청 주체에 차이가 있음.
- 그럼에도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별 관리 권한을 가지는 개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자료만으로는 대학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차원의 전반적인 기술료 배분 현황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술료 제도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전반의 현황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
- 아울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역시 필요에 따라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사용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총괄적인 자료 제출 요청 근

거와 별개로 현행 시행령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자료 제출 요청 규정도 유지할 필요가 있음.

3. 연구과제 수행과정의 제재처분 기준 완화(안 제32조제1항제1호)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연구개발과제 관련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사유 중 하나인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를 “수행과정이 부적절한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게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 ----- ----- ----- ----- ----- ----- ----- ----- -----.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u>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u>	1. ----- ----- <u>수행과정이 부적절한</u> -----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 결과,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를 제한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5년간(2021~2025년) ‘연구과정과 결과 극히 불량’을 사유로 한 제재처분은 제재부가금 부과 199건(약 395.4억 원), 참여제한 부과 651건에 달하여 전체 제재처분 사유 중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사유별 제재부가금 부과 현황 >

(단위: 건, 억원)

사유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연구과정과 결과 극히 불량	건수	-	7	37	105	50	199
	부과액	-	12.9	107.9	118.0	156.6	395.4
협약 불이행에 따른 과제 변경·중단	건수	-	-	26	23	16	65
	부과액	-	-	37.5	38.9	25.4	101.8
위조·변조·표절	건수	-	1	1	1	5	8
	부과액	-	1.6	0.4	0.3	17.2	19.4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건수	2	19	19	15	26	81
	부과액	0.2	6.1	13.9	4.3	14.4	39.0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 신청 또는 수행	건수	-	-	2	6	9	17
	부과액	-	-	1.8	4.7	6.9	13.3

사유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연구개발활동 건전성 저해	건수	-	-	1	-	4	5
	부과액	-	-	1.7	-	11.0	12.7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	건수	1	3	11	6	15	36
	부과액	2.4	3.6	12.0	4.2	11.0	33.1

※ 소관 부처가 NTIS에 등록한 제재정보에서 혁신법 제재사유별 제재부가금 건수와 부과액을 처분연도 기준으로 집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최근 5년간 사유별 참여제한 부과 현황 >

(단위: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연구과정과 결과 극히 불량	8	41	113	246	243	651
협약 불이행에 따른 과제 변경·중단	-	3	138	128	91	360
위조·변조·표절	-	1	6	9	23	39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5	40	58	102	89	294
연구개발 성과 소유 위반	1	-	-	-	-	1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 신청 또는 수행	1	1	39	14	23	78
연구개발활동 건전성 저해	-	-	3	2	7	12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	3	14	51	25	63	156
기술료 미납	1	42	95	188	137	463
회수금 미납	5	133	75	203	222	638

※ 소관 부처가 NTIS에 등록한 제재정보에서 혁신법 제재사유별 참여제한을 처분연도 기준으로 집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에 개정안은 제재처분의 기준에서 ‘결과’ 요건을 삭제하여 연구 결과(목표 달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수행 과정’에 초점을 맞추려는 것으로, 연구자들이 목표 미달성에 대한 불이익 우려 없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32조제1항제1호와 같이 제재처분의 요건을 기존 ‘극히 불량’에서 ‘부적절한’으로 개정할 경우, 의도치 않게 제재처분의 적용 범위가 오히려 넓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극히 불량한’이라는 표현은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로 제재 대상을 엄격히 한정하는 의미를 갖는 반면, ‘부적절한’이라는 표현은 다소 포괄적이어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행과정상의 오류나 단순 절차 미숙까지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소지가 있음.

- 특히 ‘성실한 실패’와 제재 대상이 되는 ‘부적절한 수행과정’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경우, 연구자 입장에서는 개정 전후의 제재 예측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질 우려도 있음.

- 따라서 연구자의 행정적 제재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한 실패를 용인하려는 개정안의 본래 취지를 온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한정할 수 있는 용어를 추가하거나, 하위법령을 통해 ‘부적절한 수행과정’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236